

보도시점

2025. 3. 31.(월) 12:00

4. 1.(화) 조간

배포

2025. 3. 28.(금)

농식품부와 환경부, 협업으로 봄철 가축분뇨 관리 점검 및 현장 지원 강화

-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농식품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지도·점검 추진,
축산농가 등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우수시설 포상 등 환경보전 유인책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봄철 퇴비·액비 살포가 활발해지는 시기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농가), 처리시설 등 약 2,000개소 점검 예정

이번 지도·점검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분뇨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 수질기준 등)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등 가축

분뇨 및 퇴비·액비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부숙도(腐熟度):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 부숙되지 않은 분뇨는 악취 발생 원인

** 살포되는 퇴비·액비는 「가축분뇨법」제13조의2에 따른 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아울러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관리 우수시설을 발굴할 경우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여 환경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 협업을 통해 봄철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축산업계의 퇴비·액비 부숙도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현장 애로사항 지원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주요 위반 사례

2.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점검·지원 계획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책임자	과 장	김재경 (044-201-2351)
		담당자	사무관	김보민 (044-201-2362)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김경록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현왕진 (044-201-707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의무 주요 위반사례



1 퇴비사 이외 장소(농경지, 하천변 등)에 분뇨·퇴비 야적·방치

- 퇴비 보관 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관련근거: 「가축분뇨법」 제10조



2 퇴비·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및 농가 내 미비치

- 퇴비·액비 반출 시 기록, 과거 3년간 대장 보관
- 관련근거: 「가축분뇨법」 제39조



분뇨 단순 방치시 내부 미부숙·부패 (악취·가스발생)

3 미부숙 퇴비 살포 및 부숙도 검사 미 실시

- 퇴비·액비 살포 후에도 미부숙 적발 시 과태료 대상
- 관련근거: 「가축분뇨법」 제13조 및 2



4 축사 및 처리시설 허가·변경 신고 누락

- 무허가·미신고 시설 사용 또는 변경 허가신고 누락 시 행정처분 대상
- 관련근거: 「가축분뇨법」 제11조 및 같은법 제12조

가축분뇨 등 관리 미흡으로 공공수역을 오염 또는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 시 즉각 고발 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

1 부처 협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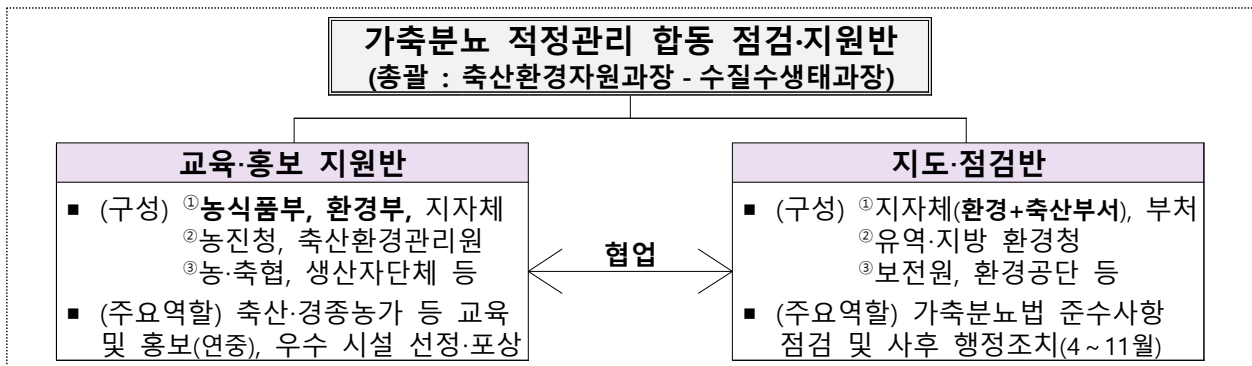
□ 배경 및 목적

- (기존)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연 2회 (상·하반기) 환경청·지자체와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추진
- (개선)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란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속 이외 ^{확대} 교육·홍보 등으로 농가의 자발적 환경보전 참여 유도

□ 지도·점검 전략 및 지원반 구성

기존(환경부) 점검 ⇒ 개선(농식품부·환경부) 협업점검 + 최초 애로사항지원(교육·홍보)

- (전략) 가축분뇨 배출자 및 이용자의 환경보전 인식 제고, 환경오염 방지 및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 마련
 - (인식 제고) ^{환경부·지자체} 환경부서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농식품부 및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현장 애로사항 지원을 통해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추진
 - (동기 부여) 점검 시 ①환경관리 우수시설 대상 인센티브 검토, ②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안내를 통해 환경과 상생하는 축산발전 추진 유도
 - (합동 점검·지원반 구성) 환경부·농식품부 담당과장을 공동반장으로 하고, 교육·홍보반 및 지도·점검반을 구성·운영
 - (인센티브 병행) 점검 시 환경관리 우수시설 발굴 → 인센티브*와 연계 방안 검토
- * 상장 수여,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국비사업 지원한도 상향, 지역별 우수관리 사례 전파 등



< 교육·홍보 지원반 개요 >

□ 추진 목적

- 단속 중심의 점검에 앞서 현장 애로사항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등에 대한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 제고

□ 추진기간('25.상) : 2025. 3. 17 ~ 6. 30(106일)

□ 구성 : 농식품부·환경부(주관), 시·도 및 시·군·구 축산·환경부서, 농진청, 축산환경 관련 기관, 농·축협,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등

○ 농식품부·환경부 주최 중앙 집합 교육 추진(3.24 주간)

- * 관리대장 미기록, 퇴액비 야적유출, 미부숙 가축분뇨 살포 등 주요 적발사례 위주 지도 강화

○ 시·도 및 시·군 지자체, 생산자단체, 지역 농·축협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추진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교육·홍보 추진

- * 교육자료 배포 등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및 월별 추진실적 취합

□ 교육·홍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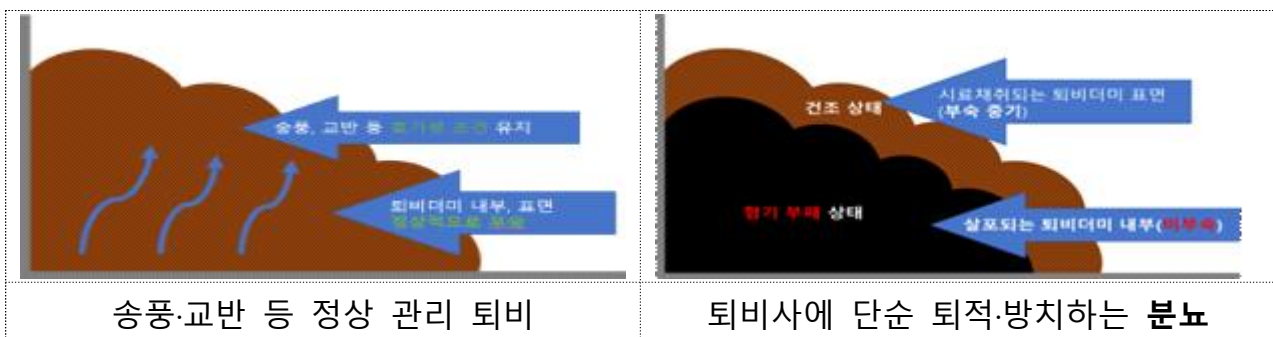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업체(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액비유통센터, 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등) 등

< 중점 교육·홍보 사항 >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처리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 적정 송풍·교반 통해 퇴비 더미 전반에 대한 부숙 관리 필요 등

- * 퇴비사 내 단순 분뇨 퇴적 시 더미 내부의 분뇨는 미부숙된 상태로 살포



< 지도·점검반 개요 >

□ 추진 목적

-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 점검
-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670호)'

□ 점검기간('25.상) : 2025. 4. 1 ~ 6. 30(91일)

- 원칙적으로 점검기간 내 실시하되, 재해·가축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점검 일정 및 지역 조정 가능

□ 구성 : 시·도(주관), 환경부·농식품부, 유역(지방)환경청,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축산환경 관련 기관 등

- 주관기관에서 점검반(시·군·구 환경, 축산부서 담당자 등) 구성, 점검일정 등 세부계획 수립,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업무 지원

주관기관(17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기관(7개 환경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원주, 대구, 전북

□ 점검 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업체(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액비유통센터, 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등) 등
- *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의 경우 점검에서 제외 가능. 단, 최근 2년간 지도·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점검 대상 포함
-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 * 침출수 유출 시 녹조 발생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큰 4대강 수계 본류 및 주요 지류에 인접한 시설을 점검대상에 포함
- 무허가 축사 시설, 지자체 간 경계지역 악취 등 발생 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돼지분뇨),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업자,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경우 1/6이상 점검

< 중점 지도·점검 사항 >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처리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입(유입 우려 포함)하는 행위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미이행에 해당(가축분뇨법 제10조제1항 위반)

< 야적 퇴비 부적정 보관 사례 >



□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배출시설 변경허가(50%이상 증설) 또는 변경신고(50%미만) 없이 규모를 증설하는 행위

* 무허가·미신고 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미이행에 해당(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
무단 증설 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고) 미이행에 해당(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 위반)

- 준공검사 미이행 상태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사용 행위

* 준공검사 신청의무 미이행에 해당(제15조 위반)

- 가축분뇨·퇴비·액비·소화액 등의 축사 주변 유출, 관리일지 미작성 및 미보관, 퇴비장 내 빗물·지표수 유입,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등 배출시설·처리시설 운영 관리기준 위반 행위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미준수에 해당(제17조제4항 위반)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무허가 및 재활용 미신고 영업 행위

* 가축분뇨 업종별 허가 및 재활용신고 미이행에 해당(제27조 및 제28조 위반)

□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에 관한 사항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관리 부적정(제17조제1항제1호 위반)
-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 또는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관리 부적정(제17조제1항제2호 위반)
- 정화시설에 유입된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관리 부적정(제17조제1항제3호 위반)
-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경종 농가 등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 * 원칙적으로 자원화시설에서 발효되지 않은 퇴비·액비 제공은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에 해당(제17조제1항제4호 위반)
- 액비의 살포지 외 장소에서의 살포 또는 살포기준 미준수, 퇴비·액비 투기, 방류수질기준에 맞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등
 - * 퇴비·액비의 무단 살포, 방류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가축분뇨 무단 배출은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에 해당(제17조제1항5호 내지 제7호 위반)

□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검사에 관한 사항

-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 여부 및 수질검사 실시
 -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07.7.6)」중 청정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정화시설의 방류수 채취 실시